

일반연수(D-4)

)

활동범위 및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학(D-2)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·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- 유학(D-2)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- 국·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,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-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(실습사원)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-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양성한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해외법인 전문인력의 국내 인턴십 참여
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	2년
공관장 제령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	<p>1. 어학연수(한국어연수: D-4-1, 외국어연수: D-4-7)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<p>① 쿠바,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민</p> <p>②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, 베트남, 우즈벡, 중국의 어학연수생</p> <p>③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, 베트남, 우즈벡, 중국의 어학연수생</p> <p>가. 대상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학(D-2)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(대학) 부설 어학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** (전문대학 이상의 대학) 부설 어학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학 총·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(필요시 정관 등 증빙서류 정구 가능) **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※ 평생교육시설(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) · 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(D-4)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<p>나. 해당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(학력입증 절차는 유학(D-2) 사증 신청 시와 동일)

<p>▶ 목차</p> <p>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외국어 연수(D-4-7)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- 일반연수(D-4) 사증발급*(한국어 연수생: D-4-1, 외국어 연수생: D-4-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<u>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(C-3-1) 사증 발급 대상</u> <p>다. 연수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학연수 사증 신청을 위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한국어 강사)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(3급 이상, 외국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)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일정 인원 고용하고 있을 것 - (강사 비율) 학생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일 것 - (수업운영) 주중(월~금) 최소 4일 이상,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(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) - (주간 및 정규과정) 주간(일과시간으로 9시~18시)에 월요일~금요일 사이에 출석수업 방식으로 과정이 운영될 것 <p>라. 사증발급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(D-4) 사증 <p>마. 신청 장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<p>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* (대학 총·학장 발행) ⑤ 재학증명서 또는 <u>최종학력 입증서류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⑥ <u>재정 입증서류*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정능력 입증서류(예시, 잔고증명서, 통장, 장학금증명서, 입출금내역서 등)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(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) ※ 부.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년간 (어학연수 6개월)의 재정능력 (등록금 + 체재비)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획서(강의시간표, 강사구성표,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)
--	--

	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											
<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-2019.10.1부 적용>												
대학별	국가별	학생유형	사증 발급	사증발급 인정서	전자 비자							
인증 대	우수 인증대	국적무관	어학연수(D41)	<input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×						
			유학(D21~8)	<input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					
	인증대	국적무관	어학연수(D41), 유학(D2)	<input type="radio"/>	×	×						
			석사(D23), 박사(D24)	<input type="radio"/>	×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					
일반 대	일반국가 중국, 베트남, 몽골, 우즈벡	어학연수(D41), 유학(D2)	<input type="radio"/>	×	×							
		어학연수(D41)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×							
		유학(D2)	<input type="radio"/>	×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						
	하위 대	컨설팅대 중국, 베트남, 몽골, 우즈벡	일반국가	어학연수(D41), 유학(D2)	<input type="radio"/>	×	×					
D21~5, D27			<input type="radio"/>	×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						
D41, D26, D28		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×							
비자제한		국적무관	D24, D25, D26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×						
※ 단 쿠바,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												
2.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(D-4-3) 사증발급												
○ (해당자) 21개* 국가 외의 기타국가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												
* <21개 국가>: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												
※ 상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 발급 대상임												
○ (사증신청)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												
○ (사증발급 내용) 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												
☞ 기본원칙, 심사기준 등은 ‘사증발급인정서’ 발급대상 참조												
사증발급인정 서 발급대상	1. 어학연수(D-4-1) 자격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, 베트남, 우즈벡, 중국의 어학연수생 ③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, 베트남, 우즈벡, 중국의 어학연수생 											
○ 대상기관, 연수과정, 해당자(학력요건 포함) 등은 상단의 사증발급 기준 준용												
○ 신청장소												

▶ 목차

사증발급인정 서 발급대상

-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
 - 사증포털시스템(www.visa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유학생담당자에 한함)
-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
-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(D-4) 사증발급인정서

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
-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- ③ 표준입학허가서* (대학 총·학장 발행)
* 유학생정보시스템(FIMS)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장 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"초청장"으로 대체
-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*
※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
- ⑤ 재정 입증서류*
* 부·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※ 재정능력 입증서류(예시, 잔고증명서, 통장, 장학금증명서, 입출금내역서 등)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(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)
- ⑥ 연수계획서(강의시간표, 강사구성표,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)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2. 기업 맞춤형 인턴십(K-Trainee, D-4-2K)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
❖ 대상 국가 : 베트남, 중국, 태국, 일본,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 <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기준 아시아권 진출 기업 수를 참고하여 선정 >

※ 상기 9개국에 대해서만 기업 맞춤형 인턴십(D-4-2K) 사증을 허용하며, 2년간 시범운영

가. 초청자(국내 기업)

○ (요건) 상기 대상국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·지사(연락사무소

<p>▶ 목차</p> <p>사증발급인정 서 발급대상</p>	<p>제외)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기업(본사 및 지점, 연구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초청인원)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% 내에서 초청 가능. 단,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100명*을 초과할 수 없음. * 현지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전문인력을 모두 합산한 인원 ○ (초청제한)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, 과거 1년 이내 기업 맞춤형 인턴십(D-4-2K) 참여자 중 10%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시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 제한 <p>나. 피초청자(외국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맞춤형 우수대학생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#ccc; padding: 5px;">❖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후원·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토픽 2급 이상 소지하고 아래 ①~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산학협력 체결) 기업과 현지 대학이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MOU 등의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② (후원) 교육 커리큘럼, 장학금, 연구비, 교육시설·물품 등 실질적 지원 ③ (학력·한국어·나이) 현지 산학협력 체결대학 계약학과 등의 재학생(학사과정 3년 이상, 석·박사 포함)으로 토픽(TOPIK) 2급 이상 소지한 29세 이하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법인 전문인력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#ccc; padding: 5px;">❖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으로 특정활동(E-7-1, 2)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 예정인 사람으로 아래 ①, ②요건 모두 충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전문인력) 특정활동(E-7) 전문·준전문인력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※ 생산직 종사자는 제외 ② (직종) 전문·준전문인력(E-7-1~2) 자격 77개 직종 분야의 국내 본사 인턴십 참여 <p>다. 제출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 맞춤형 인턴십(D-4-2K) 피초청자 유형(맞춤형 우수대학생, 현지법인 전문인력)에 따라 공통서류 외에 각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
---	--

		구 分	제출 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목차		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	공통 서류	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여권사본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③ 해외법인·국내 초청기업 관계 입증서류 - 초청기업 사업자등록증, 해외 법인 설립 신고서 등 ④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, 상시 근로자 수 입증 서류 ⑤ 결핵진단서(해당자) ⑥ 인턴·연수 활동 계획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 가 서 류	맞춤형 우수대학생	① 현지 대학과의 산학협력 체결 입증서류(MOU 등) ② 기업이 맞춤형 인재로 양성·후원하는 입증서류 ※ ①번 산학협력 체결서에 인재 양성, 후원 내용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③ 재학증명서 및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현지법인 전문인력	① (필수) 재직증명서 - 담당 업무, 재직 기간 포함 ※ ①번으로 전문인력 판단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신청 장소 및 발급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 장소 : 초청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○ 발급 내용 : 체류기간 6개월 이내, 단수 ※ 기업 맞춤형 인턴십(D-4-2K) 자격 소지자는 아래 붙임 1, 2 안내문 참고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발급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맞춤형 우수대학생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현지 대학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▶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▶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사증발급신청·발급 (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▶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입국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현지 대학·기업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신청) 초청자 (발급) 출입국·외국인관서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신청)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(발급) 재외공관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외국인</td> </tr> </table> ○ 현지법인 전문인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현지 법인 채용·근무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▶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▶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사증발급신청·발급 (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▶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입국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해외 현지 법인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신청) 초청자 (발급) 출입국·외국인관서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신청)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(발급) 재외공관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외국인</td> </tr> </table> <p>※ 국내에서 기업 맞춤형 인턴십(D-4-2K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</p>				현지 대학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	▶	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	▶	사증발급신청·발급 (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)	▶	입국	현지 대학·기업		(신청) 초청자 (발급) 출입국·외국인관서		(신청)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(발급) 재외공관		외국인	현지 법인 채용·근무	▶	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	▶	사증발급신청·발급 (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)	▶	입국	해외 현지 법인		(신청) 초청자 (발급) 출입국·외국인관서		(신청)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(발급) 재외공관		외국인
현지 대학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	▶	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	▶	사증발급신청·발급 (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)	▶	입국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지 대학·기업		(신청) 초청자 (발급) 출입국·외국인관서		(신청)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(발급) 재외공관		외국인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지 법인 채용·근무	▶	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	▶	사증발급신청·발급 (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)	▶	입국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외 현지 법인		(신청) 초청자 (발급) 출입국·외국인관서		(신청)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(발급) 재외공관		외국인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(D-4-3)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가. 교육기관

- (교육기관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**초·중·고등학교**(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는 제외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**외국인학교** 및 **대안학교***
 - *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,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
-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**외국교육기관**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**과학영재학교**

※ (주의) 단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2, 제12조에 따른 의무(무상)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

나. 해당자

1)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

-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의무(무상) 교육기관 전액 장학생의 경우, 청소년 교류 또는 교육 나눔 목적에 한해 허용
- 학비 및 체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

2)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

(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)

-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,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

- 학비(수업료, 기숙사비,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)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
 -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

▪ 후견인

-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,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(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)
 - 불법체류 다발국가(21개국)*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, 자산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

* 불법체류 다발국가(21개국):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폐루

**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

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

<p>▶ 목차</p> <p>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단, 고등학교(중학교 이하 제외)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(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) 				
	<p>다. 권한 위임 및 관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 · 외국인청(사무소 · 출장소) <p>라. 사증발급인정서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 <u>21개*</u>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<21개 국가>: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 ※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지방자치단체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유학생은 사증(재외공관장) 발급 대상 ○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의무(무상)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<p>마. 사증발급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 				
	<p>바. 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공통서류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③ 입학허가서(학교장 발행, 불임 1 서식)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(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학비 납부 내역서(수업료·기숙사비·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)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* (불임 2 서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모(2촌 이내 친인척)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'기숙사 입소확인서'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</td> </tr> </table>	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③ 입학허가서(학교장 발행, 불임 1 서식)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(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) 	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학비 납부 내역서(수업료·기숙사비·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)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* (불임 2 서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모(2촌 이내 친인척)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'기숙사 입소확인서'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③ 입학허가서(학교장 발행, 불임 1 서식)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(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) 				
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학비 납부 내역서(수업료·기숙사비·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)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* (불임 2 서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모(2촌 이내 친인척)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'기숙사 입소확인서'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(인증 또는 공증)한 원천징수영수증, 부동산소유증명, 부동산거래계약서, 예금잔고증명 등 				

<p>▶ 목차</p> <p>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</p>	<p>⑨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(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등)</p> <p>⑩ 가족관계 입증서류 (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(번역본 첨부 원칙*),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** <p>*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,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(붙임 3 양식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</p> <p>** <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> 중국 :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, 필리핀 : Family Census, 인도네시아 : 가족관계증명서 (KARTU KELUARGA), 방글라데시 : 점머 까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, 베트남 : 호적부 (So Ho Khau) 또는 출생증명서 (Giay khai sinh), 몽골 : 친족관계증명서, 파키스탄 : Family Certificate, 스리랑카 : 빠울러 서티피케이트, 미얀마 : 가족관계증명서 (잉타웅수사엔), 네팔 : 전마달다, 키르기즈스탄, 카자흐스탄·우즈벡·우크라이나·태국 : 출생증명서</p>
<p>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</p>	<p>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(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문)</p> <p>⑥ 초청 목적 입증서류(교육 계획(안), 진로 지도(안) 등)</p>
<p>4. 한식조리연수생(D-4-5)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</p> <p>가. 업무처리절차</p> <pre> graph LR A[연수추천서 발급] --> B[사증발급 인정서 신청] B --> C[사증발급인정서 (번호) 발급] C --> D[사증 발급 신청] D --> E[사증발급] F[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(at)] --- B G[교육기관] --- B H[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(사무소·출장소)] --- C I[연수대상 외국인] --- D J[재외공관] --- D </pre> <p>나. 연수대상 : 아래 ①, ②, ③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p>①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	

<p>▶ 목차</p> <p>사증발급인정 서 발급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-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(전문학사 포함) 소지자 - 조리 관련학과 (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)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<p>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(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OPIK* 1급 또는 B-KLAT** 120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립국제교육원 (www.topik.go.kr)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53개국 178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(연 2회).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** 한국어능력평가원 (www.kets.or.kr)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15개국 25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(연 4-6회).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한국어능력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-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-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 (100시간) 수료한 자 - 대학교부설 어학원에서 1분기 (150시간)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은 자 -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* 제출자 (동일언어권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(교육) 기관은 한식조리연수생이 연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한식조리연수생 입국 후 월 12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(붙임 5 참조) - 통역요원은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강사는 [붙임 6]에서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<p>③ 심신이 건강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,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<p>다. 연수추천 기관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천기관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(aT) ○ 추천요건 : 연수대상자의 학력, 자격증, 경력요건, 한국어능력 등 입증서류* 징구·심사 후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① 졸업증명서 (조리사자격증, 조리관련학과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) ② 경력증명서 (해당자) ③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[TOPIK, B-KLAT,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증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,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득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, 대학부설 어학원 수료증 (정규과정 1분기 또는 150시간 이상), 또는 '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' 중 택일]
--	--

<p>▶ 목차</p>	<p>○ 추천절차 : 추천서는 초청자에게 발급하고, 추천 시 징구서류는 스캔 후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 공문으로 송부</p> <p>라. 초청자 : 연수예정 교육기관의 대표</p> <p>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법인등기부 등본 등)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(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(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 ⑤ 연수계획서 (연수일정*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말 위주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,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까지 가능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의 추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aT 송부자료 (학위증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aT에서 송부예정)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밀심사 ☞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*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--------------------	---

5. 우수시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(D-4-6)

가.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

- (허가권한)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
- (사증발급 내용) 체류기간 6개월 이하, 단수 사증
 - 사증발급인정서로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며,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불가

나. 연수 허용기관 기준 (다음 ① ~ ⑥ 요건 모두 충족)

-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국내 상장기업 설립(또는 연계) 전문기술 교육기관
 - *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
 - * 전문기술 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

	<p>있는 기술·기능분야를 말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<p>※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(어학당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)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 원은 제외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<p>※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, 유럽,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,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,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<u>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</u>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<u>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*</u> <p>* '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' 이라 함은 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별표2에 따른 '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'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에 따른 전공대학 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공대학 : 국제예술대, 백석예술대, 정화예술대 <p>② (운영실적) <u>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</u></p> <p>③ (연수비용) 교육과정 <u>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(연 기준 800만원)</u> <u>이상인</u> 교육기관</p> <p>④ (연수과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경영·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, 도배, 미장, 세탁, 장의, 호스피스,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-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-4-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<p>※ D-4-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</p>
--	---

	<p>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(예.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론 및 실기 등 교육과정 외부 기관 위탁 불가 <p>⑤ (연수시간) <u>주중(월-금) 최소 4일 이상,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</u></p> <p>⑥ (연수시설)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숙사)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(고시원, 여관,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) - (교육장) 연수(교육) 과정 계획에 따른 이론과 실기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<p>다. 외국인 연수생 기준 (다음 ①~③ 요건 모두 충족)</p> <p>① (연령 및 학력) <u>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,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</u></p> <p>② (체류경비)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생(D-4-1)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국가나 기업 등에서 체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관련 서류로 증명 가능함. 은행 잔고 증명 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함 <p>③ (한국어능력)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어 능력 기준 :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6. 1. 1부터 ①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,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, ③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이상 이수로 상향' <p>라.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, 불법체류자 발생 수[*]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 연수기관에서 연수목적으로 초청해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미등록, 중도이탈,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으로 불법체류중인 자와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<p>마.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초청자의 범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연간 2회 이상
--	--

	<p>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</p> <p>※ (신고사유)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, 입국 후 미등록,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,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(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법체류율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신규초청 제한하고, 신규초청 제한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(이탈자 포함)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%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초청인원</th>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불법체류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명 이하</td><td>30%</td></tr> <tr> <td>16명 ~ 50명</td><td>20%</td></tr> <tr> <td>51명 이상</td><td>15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연수생에 대한 강제노동, 인신매매, 임금체불(현장실습 수당), 성폭력·성희롱 등 연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되거나,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연수중단</p>	초청인원	불법체류율	15명 이하	30%	16명 ~ 50명	20%	51명 이상	15%
초청인원	불법체류율								
15명 이하	30%								
16명 ~ 50명	20%								
51명 이상	15%								
첨부서류									
연수생 준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종학력 입증서류(공증) 및 입학허가서(교육기관장 발행) ■ 재정능력 입증서류(잔고증명, 부모 재정능력 등) ■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■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(토픽 1급이상, 세종학당 초급1 과정 이상 수료증) <p>※ 2026.11부터 토픽 2급이상, 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으로 상향</p>								
연수기관 준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■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범원발행) 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■ 연수계획서(강의시간표, 강사구성표, 연수시설, 학비 등의 내용 포함) ■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■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(교육청 발행, 직업기술과정) 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(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,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) ■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) <p>※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</p>								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련성 입증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(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) ▪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(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) ▪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(교육부장관 발행, 학점인정 입증) 해당자에 한함 ▪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▪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<p>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6.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(D-4) 사증발급인정서 발급	<p style="background-color: #e6f2ff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(연구 활동)를 증명하는 서류(연수일정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등) ③ 연수기관의 설립관련서류 ④ 재정입증 관련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-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(미화 3천불 이상) ⑤ 신원보증서 (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(중국인의 경우만 해당) <p>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참고사항	<p>○ 평생교육시설·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,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·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필요

▶ 목차

[평생교육시설 기관의 형태 및 설립 목적]

- ▶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과정 및 시설·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·고등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·성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함
- ▶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시간적·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고용주가 교육경비를 부담함
- ▶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